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역정보화 교육에 따른 장비확보 예산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
- 답 : 인력은 전산직, 통신직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, 제2청사(구 경찰서)가 준공되면 지역정보화 산 교육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, 장비확보는 현재 컴퓨터를 금년내 15대 확보되겠으나 내년에는 20대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임.
- 문 : 안 제7조제3항 중 민간중심으로 지역정보센터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 지원의 명시 필요성은
- 답 : 21세기 지역정보화에 대응키 위하여 사전 대비책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.

6. 토 론

<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는 의견 >

- 찬성 :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시 예산의 범위내 지원함이 타당하며 예산지원시는 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가능하므로 명시하여도 관련없음.
- 반대 : 안 제7조제3항은 안 제7조제2항으로 충분히 본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 필요.

7. 심사결과

-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